#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0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이종배・김소희・이종욱

김용태 • 이만희 • 권영진

강승규 · 성일종 · 조배숙

박덕흠 · 송석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함으로

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여야한다.

제7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의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제52조(위원회의 개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 개회한다. <단서 신	
<u>설&gt;</u>	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여
	<u>야 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	4
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	
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후단	<u>이 경</u>
<u>신설&gt;</u>	우 의장은 의원에게 의사일정
	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의할
	<u>수 없다.</u>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	<u>&lt;</u> 삭 제>
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